

제434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임시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6년4월14일(화)

장 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디지털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87)
2. 디지털크리에이터(1인 미디어 창작자)산업 진흥법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06)
3. 디지털크리에이터 권리보호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74)
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05)
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53)
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74)
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44)
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85)
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823)
1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99)
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44)
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09)
1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28)
1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46)
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52)
1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04)
1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09)
1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6726)

1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6243)
2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6230)
2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361)
2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6276)
2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754)
2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795)
2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087)
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992)
2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6202)
2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훈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7938)
2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05)
3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89)
3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43)
3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22)
3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18)
3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51)
3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04)
3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97)

상정된 안건

1. 디지털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87)
..... 4
2. 디지털크리에이터(1인 미디어 창작자)산업 진흥법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06) 4
3. 디지털크리에이터 권리보호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74) 4
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05) 4
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53) 4

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74)	4
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44)	4
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85)	4
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823)	4
1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299)	4
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7144)	4
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209)	4
1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6028)	4
1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046)	5
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252)	5
1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604)	5
1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509)	5
1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 안번호 2216726)	5
1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6243)	5
2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6230)	5
2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361)	5
2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6276)	5
2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754)	5
2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795)	5
2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087)	5
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992)	5

2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6202)	5
2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훈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7938)	5
2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05)	5
3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89)	5
3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43)	5
3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22)	5
3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18)	5
3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51)	5
3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04)	5
3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97)	5

(10시00분 개의)

○소위원장 김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소위에 회부된 36건의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안 심사를 위해 과기정통부2차관과 방미통위 상임위원 등 관계자들이 의사일정에 맞춰 참석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방미통위 건을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 디지털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87)
2. 디지털크리에이터(1인 미디어 창작자)산업 진흥법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06)
3. 디지털크리에이터 권리보호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74)
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05)
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53)
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74)
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44)
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85)
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823)
1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299)
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7144)
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209)
1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6028)

1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046)
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252)
1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604)
1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509)
1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6726)
1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6243)
2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6230)
2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361)
2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6276)
2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754)
2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795)
2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087)
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992)
2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6202)
2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훈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7938)
2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05)
3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89)
3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43)
3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22)
3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18)
3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51)
3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04)
3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97)

○소위원장 김현 의사일정 1항 이해민 의원 대표발의 디지털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36항 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36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언론인이 없지요?

의사일정 1항부터 3항까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소위 심사자료 1항부터 3항 디지털크리에이터 육성·지원 및 권리보호 등을 위한 제정 법률안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이미 여러 소위원들께서 보셨겠지만 자료 3쪽의 주요 내용, 4쪽 주요 조문별 내용, 그다음에 5쪽의 법률안별 조문체계 비교 부분 그다음에 검토보고 요지 부분들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0쪽에 보시면 유사 법률과의 정의 조항 비교도 위원들께서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2쪽의 문체부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서 다른 의견을 제시한 부분도 익히 보고 받으신 바와 같습니다.

그다음에 14쪽의 지난 법안소위 때 내용을 보시면 이해민 위원 등은 영세한 크리에이터도 보호하고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또 이훈기 위원, 한민수 위원 등은 여러 가지 법의 취지와 목적을 고려해서 상임위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 또 이정현 위원은 목적과 취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통합해서 추진해 보자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김현 소위원장도 유료방송이 방미통위로 이관됐으니까 방미통위가 논의의 주도권을 가지고 추진해 보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런 걸 감안해서 지금 제정법이기에 때문에 축조심사 또는 공청회 등을 해야 되는데요, 이것은 소위원회에서 결정하시면 되고.

저희들이 지난번 소위 때 여기 제명, 목적, 디지털크리에이터산업 정의 조항, 디지털크리에이터미디어서비스 정의 조항까지 하다가 멈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들께서 축조심사를 통과한다는 차원에서 모든 내용을 한번 들으시고 논의를 하시거나 아니면…… 사실상 핵심은 미디어서비스·산업 정의 조항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 거고 나머지는 다 제정법이고 지원법이기에 때문에 체계·지원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논의의 핵심은 정의 조항까지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실지, 정의 조항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를 하시고 나중에 공청회를 거쳐서 하실지 아니면 오늘 축조심사를 다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소위원장 김현 다 마무리하시지요. 제정법이니까 오늘 다 마무리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제명, 목적은 지난번에도 논의가 됐었는데요 그래서 여러 위원들께서 진흥 그다음에 권리보호, 지원 부분이 포함돼야 된다는 걸 감안해서 제명도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형태로 수정의견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다만 문체부는 기존 법령과의 중복 그다음에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이라든가 콘텐츠산업 진흥법 등을 감안해서 입법 실익이 높지 않다는 얘기를 계속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5쪽의 디지털크리에이터 정의 관련입니다.

이 부분도 여러 위원들께서 보시면 수정의견 사항으로 ‘1인 이상의 사업자’ 그다음에 음영 처리한 부분 보시면 ‘디지털크리에이터 제작물을 크리에이터미디어서비스제공사업

자를 통해 유통하는 자'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요. 문체부는 역시 종사자의 실제 역할을 구분해서 권리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일괄 규정하는 게 권리보호를 저하시키는 측면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7쪽입니다.

디지털크리에이터산업의 정의입니다. 산업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다음에 문체부는 역시 온라인 기반 콘텐츠산업, 일종의 새로운 정의가 필요한 신산업은 아니더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디지털크리에이터미디어서비스 정의입니다. 정의를 보시면 요건이 있습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이용자가 영상 등 디지털 제작물 등을 전송·유통·관리하는 서비스 산업인데 이 부분도 최형두 의원안, 정동영 의원안 등을 감안하고 일부 포괄해서 수정의견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디지털크리에이터미디어서비스제공사업자입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입니다. 다만 여기서의 '총매출액·이용자 수 등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정동영 의원안, 최형두 의원안에도 포함돼 있는데 인터넷기업협회나 이런 데서는 매출액이나 이용자 기준으로 하게 되면 소수 대형 플랫폼 위주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오히려 영세 플랫폼과 차별이 생긴다라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통상적으로 제정법 만들 때 다른 법률과 관련된 규정을 우선 적용 규정으로 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진흥법이니까 방미통위 입장에서는 진흥법의 우선 적용 규정이 필요한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체부 소관 문제에 관해서는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쪽, 재원 관련입니다.

디지털크리에이터 관련 재원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1항·2항을 보시면 제명 고려해서 일부 자구도 조금 수정하고—권리보호·지원을 넣고—그다음에 방발기금하고 정진기금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걸 산업 진흥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2쪽입니다.

3항·4항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인 이하 사업자로 인원 제한하는 게 오히려 영세 기업들에 대한 차별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삭제하는 게 어떨까라는 입장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 말씀을 듣고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현 정부 측 의견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상임위원 고민수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번 법안소위 이후로 문체부와 저희는 입장 차를 줄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문화체육관광부는 콘텐츠 전주기 육성이 문체부의 역할이고 기존 문화적 요소 유무로 소관을 구분하자는 입장을 아직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문체부 입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방미통위가 15년부터 지속적으로 크리에이터 진흥정책을 해 왔는

데 문체부 주장대로라면 이 진흥정책이 크게 축소될 우려가 있고 또한 업계에서도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장하는 문화적 요소에 따른 역할 분담안은 수용하기 어려운 입장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현 위원님들 의견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수 위원 한민수입니다.

지난번 때도 똑같은 저의 문제 제기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문체부 입장도 똑같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율이라는 게 어느 부분이 됐고 또 계속 안 되는 부분이 뭐고 거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김현 국장이 좀 얘기하시지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진흥국장 강도성 저희가 담당 국장들끼리 만나서 얘기를 하고 과장들끼리도 만나고 했는데요. 방금 상임위원님께서 보고드렸던 대로 콘텐츠 부분에 있어서 총괄 부분은 문체부 소관이다 그리고 크리에이터 진흥 관련해서는 문화적 요소를 제외하고 커머스라든지 정보 전달 이런 부분만 국한되어서 한다면 동의를 하겠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원칙적인 부분이 저희들하고 너무나 차이가 나서 협의가 진척이 되지 않았다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한민수 위원 결국 지난번 소위 때 논의된 이후로 접촉을 하고 협의를 했지만 전혀 접점을 찾은 건 없다고 해야 되겠습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진흥국장 강도성 예, 그렇습니다.

○한민수 위원 그런데 디지털크리에이터법 제정을 하는데 지금 문체부의 문화적 요소만…… 그건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진흥국장 강도성 저희도 그 부분 때문에……

○한민수 위원 이걸 어떻게 나눌 수가 있지요, 뉴스·정보 전달식으로만 딱 떼 가지고?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방미통위하고 문체부 간에 조율이 되거나 합의를 이끌어 낼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까, 현 상황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진흥국장 강도성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현 이정현 위원님.

○이정현 위원 이정현입니다.

문체부가 요구하는 대로 문화적 요소를 빼 버리면 크리에이터법에서 뉴스나 정보 전달식의 영상 콘텐츠만 남는 거지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진흥국장 강도성 예, 그렇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면 시청자들의 선호도가 더 높은 융합 콘텐츠, 문화 관련 사업들은 크리에이터법에서 전혀 다룰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면 크리에이터법 자체가 반쪽짜리 아니겠습니까, 고민수 상임위원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상임위원 고민수 거의 형해화되는 법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효성을 전혀 가질 수가 없고 사실은 콘텐츠 제작해 온 분들의 진흥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거라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면 크리에이터법에서 우리가 진흥을 위해서 노력하려고 했던 문화 관련 분야에 대해서 문체부가 만드는 법안에는 그런 규정들이 좀 담겨 있습니까? 아니

면 문제부는 문제부대로, 만약에 크리에이티브법은 크리에이티브법대로 반쪽짜리가 될 경우에 사각지대가 크게 발생합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진흥국장 강도성** 예,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제부는 콘텐츠 중심의 제작 지원이고요 저희는 아시는 바와 같이 크리에이티브를 통한 커머스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미디어와 같이 움직이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산업 자체의 진흥이 사실 반쪽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니까 지원 대상이 문제부의 경우에는 콘텐츠가 지원 대상이고 크리에이티브법은 그 대상의 주체가 크리에이티브와 사업자들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지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진흥국장 강도성** 예, 그렇습니다.

○**이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현** 혹시 우리가 재허가·재승인 할 때 보면 해당하는 방송사나 이런 것들을 다 열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디지털크리에이티브와 관련된 미디어가 몇 개 입니까, 분야별로? 혹시 확인해 온 게 있습니까? 데이터로 입증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정치문화, 경제문화, 체육도 문화고 다 문화인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진흥국장 강도성** 사업체 수가 1만 1000개 정도가 되고요.

○**소위원장 김현** 1만 1000개를 구분을 하셔 보라고요, 다음번까지. 지금 하지 말고 다음번 공청회 때 아니면 하루 만에, 1만 1000개라도 다 소트 가능하잖아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진흥국장 강도성**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현** 문화라고만 할 수 있는 게 어떤 분야인지를 특정을 한번 해 보시라는 얘기에요. 스포츠도 문화고 체육도 문화고…… 그러면 경복궁이 정치적으로 볼 때는 경복궁을 육성하는 무슨 법과 제도를 바꾸는 건 정치 영역이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건 관광인데 이걸 통칭해서 다 문화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의 문화를 어떻게 발전시킬 거냐, 크리에이티브들이 정치와 관련된 것만 하나 아니면 문화 분야도 하나 이런 얘기들이잖아요. 그러면 문화랑 특정 지어서 볼 수 있는 게 도대체 몇 군데냐라고 한번 해 보시라고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진흥국장 강도성** 구분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현** 그렇게 구체적으로 설득하는 게 필요하지 그냥 우리 문화 가져올래, 문화 진흥할래 이렇게 얘기를 하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업무잖아요.

그리고 언론진흥재단에서는 정부 광고까지 하는 거니까 다 할 수 있다, 광고는 다 우리가 한다라는 주장을 지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했었던 말이에요, 문제부가. 그걸 가지고 KOBACO의 기능 그다음에 언론진흥재단의 역할을 재조정하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그거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조중동 믿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문제부는. 종이신문 믿고 과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그 기득권 때문에 생기는 문제란 말이에요. 디지털크리에이티브는 뉴미디어지 않습니까. 뉴미디어를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건데 그걸 가지고 땅 따먹기를 하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잖아요. 그런데 이 한심한 노릇에 방미통위가 얼마나 논리적으로 이걸 설득하기 위해서 연구과제를 해서 논의를 했는지, 2025년도에 공청회를 한번

했다는 거 아닙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진흥국장 강도성**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현** 그러면 2026년도 과제에 혹시 이게 있었습니까? 크리에이터 육성에 관한 게 있었습니까? 혹시 배석한 누구, 방미통위에 원래부터 있었던 직원 없나요? 확인해 보세요, 지금 밖에 대기하고 있는 사람 있으면.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줬는지도 제가 궁금해요. 이게 물론 과기부 소관인데 과기부 때 연구용역을 했는지, 제가 볼 때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만 개가 어떻게 분류가 돼 있는지 지금 데이터가 없는 거 보면 구체적으로 이 업무를 지원하려고 하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다음번 공청회 전까지 왜 이거를 방미통위에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리적 근거들을……

현장의 목소리도 지금 충분히 반영됐습니까? 지난번에 한번 간담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뒤로 이 문제가 쟁점이 됐을 때 그런 것들이 좀 진행됐는지 확인이 좀 필요하고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얘기해 주세요.

○**노종면 위원** 저는 이 영역에 대한 중복을 피하자 이런 문제의식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보여요. 예를 들면 중소기업을 진흥하고 지원하는 정책이 있어요. 그런데 또 AI나 바이오, 어떤 특정 산업 내용, 사업의 내용을 또 지원하는 정책이 있어요. 이 두 개가 충돌합니까?

일견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1인 미디어를,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소규모 디지털 창작자들을 지원하고 교육하고 사업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 이게 이 법안의 핵심 요지라고 보고요. 문체부에서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은 그러한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비영리 창작 활동을 하는 사람의 콘텐츠 내용이 문화적인 경우에 그걸 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왜 충돌되지요?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부 간에 논의를 할 때 논점을 조금 더 쉽고 명확하게 하면 조율이 가능할 것 같아서 이런 답답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조율도 조금 더 심도 있게 진행하다 보면 접점이 찾아질 거라고 보고 국회에서의 공청회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있을 텐데 이걸 하고자 하는 방미통위에서 조금 더 쉽고 명확하게 여론을 설득하거나 상대 부처를 설득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이정현 위원** 잠깐만, 저도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아까 여쭙았던 건데 이 지원 대상이 콘텐츠냐 아니면 디지털크리에이터냐의 차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애매할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나름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콘텐츠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된다면 디지털크리에이터들이 창작 활동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사무실이라든지 스튜디오를 만들 때 이런 것들은 전혀 지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콘텐츠에 지원을 하게 되면?

그런데 디지털크리에이터를 육성함으로써 우리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런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콘텐츠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문체부와 분명히 다른 점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진흥국장 강도성** 예, 맞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한번 설명을 좀 해 주 보세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진흥국장 강도성 지금 문화부에서 하고 있는 뉴미디어법은 문화적 요소가 내재된 콘텐츠에 국한되어 있고요. 저희는 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그리고 산업 주체인 크리에이터하고 그다음에 플랫폼 전체에 대한 규율을 같이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문화부 법안은 콘텐츠 제작 활성화인 반면에 저희 법은 수익구조 개선이라든지 권리보호 그다음에 경제적 성장이라는 실질적인 크리에이터 산업생태계를 총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뉴미디어법에, 문화부 법에도 상생협력 부분이라는 게 있지만 그것은 협의체 구성이라든지 자율규약 정도로만 국한되어 있고 공정계약의 원칙이라든지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법이 조금 더 이 생태계 전체를 발전시키고 진흥시키는 데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해민 위원 그러면 문체부 쪽에서 하는 말 대비 이걸 조금 여쭙보고 싶어요.

지금 문체부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내용들은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듯이 콘텐츠에 대한 내용이지요. 그런데 이거는 그 콘텐츠를 만들어 낸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고 그렇다면 문체부에서 지금 고민을, 문체부에서 만들어 낸 내용들이 예를 들어서 영세 크리에이터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플랫폼 수익 배분 구조랄지 알고리즘이랄지 아니면 계정을 제한하고, 그거 굉장히 문제가 많잖아요. 계정 제한됐어요 등등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진흥국장 강도성 그런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민 위원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미 영세 크리에이터들, 유튜버 분들하고 공청회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 그때 한민수 위원님, 이정현 위원님, 과방위 위원님들도 함께 와 주셨는데 그분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플랫폼 사업자와의 관계 혹은 거대 사업자, 크게 하는 사업자들의 불공정계약 이런 부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루고자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방미통위에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중에서 108번, 미래지향적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이 어디 소관 업무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진흥국장 강도성 저희들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민 위원 맞습니다, 이게 방미통이 소관 업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 자체가 여기서 미디어 법제 마련하고 규제 바꾸고 그리고 투자 지원하는 부분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108번 그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문체부에서 내놓는 논리들은 알겠으나……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레거시 콘텐츠를 바라보던 그 영역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지금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중에서 미래 지향적 새로운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 부분은 방미통위 소관이라는 것을 그냥 명확하게 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현 이훈기 위원님.

○**이훈기 위원** 지금 세부적인 내용은 많이 말씀하셨고 문체부와와의 관계를 과거부터 보면 문체부와 과거 방통위의 관계가 어떤지 서로 동등하게 얘기를 하는지 되게 의문스럽고……

가장 대표적인 얘기가 방송통신발전기금이에요. 아리랑국제방송하고 국악방송에 1조 원 가까이 퍼 줬어요. 소속은 문체부 소속인데 과기부하고 방미통위에서 관리하는 그 기금을 그렇게 퍼 주는데 그것을 보면서 ‘아니, 같은 정부기관인데 어떻게 그렇게 소통이 안 되고 갑을 관계처럼 일방적일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이제 방미통위가 새롭게 출범하고 문체부하고 새로운 동등한 관계 정립이 일단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것을 가지고 계속 소모적으로 사사건건 부딪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명 정부에서 하나가 돼서 힘을 모아서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큰 틀의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노종면 위원** 의견 하나를 좀 더 붙이면, 결국 지원 대상을 문체부든 방미통위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정할 것 아니에요. 이럴 때는 중복 지원이 된다는가 이런 부분들 지원 이력이 있을 거고 이게 다 검토될 거라고 봐요, 설사 영역이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필연적으로 생긴다 하더라도. 그런데 골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럴 우려가 거의 안 보여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문체부 요구에 가장 비논리적으로 보이는,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것이 문화와 관련된 부분을 빼내라는 거거든요. 이것은 지원체계나 대상을 잘못 이해하는 데서 비롯된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같은 세상에 어떻게 영역 분류를 그렇게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융합하라고 그렇게 현실이 요구하고 있는데? 굉장히 시대 착오적인 인식 기준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현** 콘텐츠진흥원하고 방미통위하고 연관성 있는 활동이 있습니까? 아니면 콘텐츠진흥원의 기능 일부를 방미통위로 가져와야 되는 겁니까? 원래 콘텐츠진흥원이 방송위원회에 있었다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진흥국장 강도성** 예전에 공보처 시절에 방송개발원에서 하고 있던 업무를 그때……

○**소위원장 김현** 땀따먹기 할 때 졌지요? 진 거지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진흥국장 강도성** 2008년도에 산하기관들 통폐합하면서 그때 콘진원으로 다 가져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현** 그래서 사실은 방송이나 뉴미디어에 우리가 결합하고 융합해야 될 것이 되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단적으로 BTS 공연을 넷플릭스에서 독점으로 상영할 때 문체부가 한 게 있습니까? 그것을 방송에서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 게 있어요? 있냐고요. 없어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진흥국장 강도성** 예.

○**소위원장 김현** BTS가 문화인데 그것을 지상파방송에서 방송을 못 하게 하이브하고 넷플릭스가 협약을 할 때 문체부가 나서서 보편적 시청권의 일환으로 KBS, MBC, SBS, 종편·보도전문채널에서 이런 것을…… 국가자산인데 그런 노력을 안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문화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거대 플랫폼사하고는 한마디도 못 하면서 무슨 크리에이터를, 창작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겠다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한 거

예요, 문체부의 구조적인 한계점 때문에.

그래서 BTS 얘기를 좀 하십시오. 우리가 노력해서 방송사에서 보게끔 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아니, 경복궁 앞마당에서 하는데 그것을 문체부는 하이브에서 통보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 안아서 아무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었던 거잖아요.

또 하나, 스포츠도 문화예요. 이번에 JTBC가 독점해 가지고 북중미 월드컵 하는데 지금 문체부가 노력하는 게 있습니까, 방송사에게? 우리가 정부광고를 더 해결해 줄 테니까 이것 방송사들이 노력해서 국민들의 시청권을 보장해 주겠다라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잖아요, 팔짱만 끼고 구경만 하고 있으면서. 사실은 문체부는 정부 대변인의 역할을 해야 될 부처예요.

또 하나가 지금 정부광고가 쏠림 현상인데 그것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지금 언론진흥재단에서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지금 TBS가 저렇게 콘텐츠 생산을 못 해내는데 그것 지원 안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문체부랑?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종속관계 아니예요? 방미통위가 문체부에게 논리를 갖고 대화를 나눌 때 적극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나 하면 공직사회가 서열이 있어요, 방미통위 직원들이 기재부 공무원들 앞에서 꿈쩍 못 하고. 그다음에 큰 부처에 있는 공직자들은 서로 선배, 후배 이런 것 있어 가지고 행시 출신들이 잘 못 건드려요. 이런 문제를 저는 사실은 지적하는 거예요. 논리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아니면……

오늘 문체부 왔습니까, 이 자리에 지금? 오늘 와 있어요? 안 와 있잖아요. 들어야지요. 청강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문화를 강조한다면 오늘 와 가지고 들어야 될 것 아니예요, 몰래라도. 그런데 그런 노력도 안 해요. 지금 이것 관련한 법 개정, 제정법이 문체부에도 올라가 있나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진흥국장 강도성** 예, 올라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현** 소위에서 논의하고 있나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진흥국장 강도성** 비공개 공청회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현** 언제 했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은 파악하셨어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진흥국장 강도성** 예, 한 2주 전에……

○**소위원장 김현** 그래서 가셨어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진흥국장 강도성** 비공개라서 저희들이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소위원장 김현** 비공개면 그 내용은 그러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진흥국장 강도성** 내용은 저희들이 좀 확인을 했는데 요.

○**소위원장 김현** 전문을 다 입수하세요, 그러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진흥국장 강도성** 예.

○**소위원장 김현** 행정실에서 입수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주세요.

이게 사실은 아까 이해민 위원도 얘기했고 다른 과방위 위원들이 얘기했는데 과방위 위원들이 제기하는 논리보다 방미통위 논리가 더 빈약해요. 제가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

다. 오늘 같은 날은 BTS 얘기를 할까 기대를 했어요.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방미통위는 통보도 못 받았잖아요. 그게 문화잖아요.

컬리도 하나의 문화예요. 컬리가 문화잖아요. 컬리가 구 방통위에서 소상공인 지원해 줘 가지고 지금처럼 대형으로 성장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1인 크리에이터 중에 성장시킬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을 방미통위의 정말 중요한 일로 생각하고 역할을 해 주세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진흥국장 강도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현** 그다음에 공청회를 잘 준비하셔서 크리에이터들 중에 1인 미디어로서 활동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본인들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촘촘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더 얘기할까요?

○**이정현 위원** 한 가지만……

○**소위원장 김현** 예.

○**이정현 위원** BTS 얘기도 나오고 또 넷플릭스 얘기가 나와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넷플릭스와 같은 OTT 있잖아요, OTT에 대한 관리와 지원 권한이 현재 방미통위에 있습니까, 아니면 문체부에 있습니까, 아니면 걸쳐 있습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진흥국장 강도성** 지금 3개 부처가 같이 OTT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 문체부, 저희 방미통위 이렇게 3개 부처가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면 중국적으로는 한 기관에서 전담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계속 걸쳐 있는 게 낫습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진흥국장 강도성** 저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그 업무를 진흥 업무도 하고 있기 때문에 진흥과 규제 업무를 같이 통할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현 위원** 현재 문체부에서는 OTT까지 자기들의 소관으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영상미디어법 개정도 그렇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진흥국장 강도성** 예.

○**이정현 위원** 이 상황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그냥 놔두실 겁니까, 아니면 적극적으로 한번 토론을 해서 문제를 풀어 보실 생각입니까? 그냥 놔둬 버리면 나중에 진행이 될 통합미디어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방미통위가 디지털크리에이터법뿐만 아니라 거의 반쪽짜리로 전략해 버릴 수 있어요, 기관 자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고민수 상임위원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상임위원 고민수** 지적해 주신 말씀 다 새겨들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협의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크리에이터법을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의 취지가 그대로 이 법안에 반영이 돼 있는 거고 그것을 저희 방미통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우리 고유사무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직제상도 그렇고 고유업무로도 분리가 되고요.

다만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자기네 소관 영역이라고 주장하면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들을 설득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첫

번째 의문이 사실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 직무가 분명한 건데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 이 법안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하고 별도의 법안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소통의 의지가 전혀 없는 거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우려와 걱정 부분은 저희가 잘 준비해서 통합방송법을 통해서 OTT 관련 업무도 저희 방미통위가 수행할 수 있도록 입법 과정에서 적극 지원하고 준비하겠습니다.

○노종면 위원 부위원장님 말씀 일견 이해는 되는데요. 부처 간에 이견이 있으면 부처 간에 조율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여당도 또 정당도 국회에서 그런 조율 또는 조정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오늘 이 자리도 그런 이견이 있을 때 어떤 입장이 조금 더 이해되고 설득력이 있다라는 각자의 입장들을 제시하는 건데 방미통위 고유의 사무이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이렇게 이견 조정까지 해야 되냐라는 그런 인식은 부처 내 대화가 단절되는 그런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서, 또 오늘 공식 회의에서 비중 있는 분께서 비중 있는 발언을 하신 거라 저는 그 부분의 인식은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잘 조율이 됐으면 좋겠어요. 치열한 토론을 하더라도 토론이나 조정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상임위원 고민수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현 그런데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제가 왜 쉽지 않다고 보냐 하면 지난번 국정기획위 할 때 광고 문제 때문에 되게 논쟁을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타이틀 스폰서 십하고 크로스미디어랩법인데 이것이 원래 공약사항이었던 말이에요. 그런데 문체부가 광고는 자기 영역이라고 그러면서 이것을 거부해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되게 곤란한 상황이 됐었고.

또 하나가 양문석 의원이 정부광고 관련해 가지고 KOBACO하고 언론진흥재단하고 합쳐서 KOBACO에 있는 광고를 다 이쪽으로 가져가려고 그랬어요. 그게 뭐였냐면 KOBACO의 방만 경영을 이유로 들어서 KOBACO를 해체해서 언론진흥재단에 광고를 다 가져가려고 그랬어요. 그 법을 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일단 저희가 진흥법을 만들어서 KOBACO하고 시청자미디어하고 통합하는 진흥법을 만들고 그래서 법안을 상정해서 정부광고 문제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을 발전시키고 그다음에 과기정통부에 가 있는 산하기관도 일정 정도 방미통위 산하로 가져와서 방송광고·뉴미디어 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 이렇게 전개가 됐는데 아까 얘기했던 문체부는 큰 조직이고 독임제 성격을 띠고 있어서 일을 빨리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방미통위는 협의제 기구로서 논의를 많이 하면서 진흥을 더디게 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위원회다라는 인식들이 있어서 이런 힘겨루기 싸움을 하다 보면 방미통위가 제 역할을 못 해 온 게 사실이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이번의 경우는 사실 뉴미디어 영역에서 어떻게 우리가 산업을 성장시킬 거냐 그다음에 AI와 결합해서 뉴미디어 시장을 어떻게 발전시킬 거냐를 종합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이 문제를 접근해야지 논쟁의 우위에 점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게 법사위에 가면 또, 지난번에도 우리가 뭐 하나 할 때 문체부 국장이 AI법 할 때 그랬습니다. AI법. 저작권법을 외려 규제 강화하는 거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해서 국장이 나와서 반대했어요, 문체부장관하고 과기부장관은 합의했는데. 윤석열 정부 때 유상임 장관 시절에 그랬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국장님은 특별히 실무적으로 협상하고 내용을 할 때 풍부하게 설명을 해서 이 논의를 끌고 가 주셔야 돼요. 진짜 지칠 때까지 토론하셔야 돼요, 대통령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대개 쟁점 법안이 되면서 법사위 가서 계류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이것을 하루빨리 처리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나온 얘기 포함해서 잘하십시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진흥국장 강도성** 그런데 좀 전에 노종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저희가 문체부하고 협의하면서, 최초 법안이 발의됐을 때 문체부의 검토의견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저희가 다수 수용해서 플랫폼이라는 유통수단도 추가하고 사업자도 한정하고 그다음에 플랫폼에 대한 정의도 구체화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검토된 의견들을 하나씩 받아 주다 보니 어느 시점 가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문화적 요소는 다 빼, 다 제외를 해’ 이러면서 더 이상 진척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나름 노력을 했습니다만 좀 더 노력을 하도록 그리고 논리를 좀 더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현** 다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이제 23쪽부터는 지원법 또는 진흥법의 특성상 통상 제정법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담겨 있는 내용이라서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23쪽 보시면, 디지털크리에이터산업의 기반 조성 관련해 교육훈련, 우수인력 육성, 종합정보시스템 도입 근거, 제도개선 등에 관한 근거규정인데요, 그다음 전문기관 위탁까지.

그래서 이해민 의원안이나 최형두 의원안, 정동영 의원안에 우수인력 발굴이 6조에 들어 있는데 교육훈련하고 우수인력이 체계상 5조에 합치는 것 같고요, 종합정보시스템을 차라리 6조에 보내고. 그런 체계 정도 정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해민 의원안은 과기정통부장관으로 돼 있는데 정부로 하는 이유는 정부로 하게 되면 예산 부처든 최소한 부처 내에서 협의 추진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되기 때문에 정부로 수정하는 안을 수정의견에 담았습니다. 전문기관 위탁 등도 수정안으로 담았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디지털크리에이터 관련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조로 체계만 바꾼 겁니다.

26쪽입니다.

시범사업 실시 근거는 법적 근거를 두는 통상의 예입니다.

27쪽입니다.

디지털크리에이터 관련 제도개선할 수 있는…… 이것은 엄밀히 따져 보면 만약 법안이 제정되면 방미통위 소관의 법안이 되든 정부 부처의 소관이 되면 이것은 그 부처의 당연한 업무인데, 사실상 법이 없어도 해야 되는 업무인데 넣어 두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9쪽입니다.

디지털크리에이터 작업환경의 개선사업 근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정부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방미통위로 수정한 정도로 의견을 냈습니다.

그다음에 29쪽 아래 디지털크리에이터 관련 실태조사 실시·공표 근거, 통상의 예입니다. 다만 인터넷기업협회라든가 1인 소규모 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자료제출 하고 조사하려면 엄청나게 부담이 된다 이런 부분을 조금 감안해서 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인 크리에이터, 소규모 크리에이터들은 자료제출 자체조차도 중요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 달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31쪽입니다.

디지털크리에이터 관련 전담기관 지정, 이것은 통상 방미통위 소관으로 한다 그러면 전담기관 내 지정 주체를 방미통위위원회로 하는 것으로 통상 입법례입니다. 그다음 32쪽, 지원센터 지정도 통상 입법례로 방미통위를 주관으로 해서……

그다음에 넘어가서 36쪽입니다.

디지털크리에이터 지원체계에 관해서 창업·사업화 지원, 해외진출 지원, 금융지원. 통상의 입법례, 진흥법에 들어가는 내용들입니다. 이게 이제 정부로 하게 돼서 관련되는 재정 당국이든 금융 관련 기관도 다 인볼브될 수 있도록 정부로 주체를 바꾼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37쪽 넘어가시겠습니다.

38쪽 보시겠습니다.

디지털크리에이터산업 융합 정책 시책 마련하도록, 이것은 통상의 지원 예입니다.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9쪽입니다.

그다음에 해외시장 진출 지원사업 근거도 정부로 해서 통상의 예, 정부 지원 조치의 근거로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41쪽입니다.

크리에이터사업자의 자금 융자·투자, 신용보증기금 보증제도 근거를 마련하는 건데, 신보는 특정 산업에 대해서 금융지원을 별도의 법으로 규정하는 게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조금 다른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도 신중검토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42쪽입니다.

정부가 지원사업 추진에 있어 청년·소상공인을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데 취지라든가 정동영 의원안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다만 청년 산업이나 소상공인이 꼭 영세기업과 연관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43쪽입니다.

디지털크리에이터미디어서비스제공사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 통상적인 지원 근거 규정으로 보여집니다. 지원 근거, 산업 진흥 쪽으로.

45쪽입니다.

디지털크리에이터 관련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 행동강령, 자율 가이드라인 근거를 마련하는데 이것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적어도 산업 생태계 입장에서 보면 정부 입장에서 최소한의 기준, 표준계약서가 필요한데……

다만 문체부나 인터넷기업협회 이런 데서는 사실상 암묵적으로 강행규정의 형태가 되

는 게 아니냐, 가이드라인도 규제 성격이 존재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47쪽입니다.

디지털크리에이터와 사업자 간 상생협력 촉진 시책, 이것도 주체를 방미통위로 수정해서 디지털크리에이터하고 관련 사업자 간에 상생협력을 지원할 수 있는 진흥의 영역으로 보여집니다.

48쪽입니다.

디지털크리에이터 제작물 관련 협약 체결하고 권장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통상의 진흥법입니다.

49쪽 보시겠습니다.

다만 이 또한 문체부라든가 인터넷기업협회에서는 사실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게 아니냐, 사실상 강제수단 또는 공표 이런 것도 평가가 사실상 강제수단이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을 인터넷기업협회에서는 조금 규제의 강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50쪽입니다.

디지털크리에이터와 사업자 간 상생협력 기여자에 대한 포상 근거, 통상의 예로 보여집니다.

51쪽입니다.

제작물 관련 계약의 원칙을 규정하는데요. 여기 계약 원칙 부분에 최형두 의원안이든 정동영 의원안이든 이해민 의원안이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명시하고 기명해야 되고 사실상 일종의 표준계약서와 연결되는 부분인데 계약금에 수익 분배에 관한 사항 이런 부분은 조금 계약자유의 원칙과 상충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인터넷기업협회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방미통위는 통상적인 보편적 기준을 밝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다만 여기 3항을 보시면 디지털크리에이터 활동 관련 계약을 규율한다 그러면 제작과 관련 없는 활동까지 다 포함되는 것으로 보여지는 그 부분을 조금 수정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수정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수정의견 53쪽 보시면, 표준계약서도 보시면 표준계약서 이용하게 되면 계약원칙 준수해야 되는데 계약 체결로 간주한 것으로 보게 되면 이것도 사실상 표준계약서를 강제하는 게 아니냐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도 통상적인 표준계약서가 약자를 보호한다는 통상의 취지의 입장에서 보면 저는 수용 가능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디지털크리에이터산업에 관한 표준계약서 근거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문체부는 그래도 다른 표준계약서가 다른 콘텐츠 산업 분야에 존재하니까 별도의 법을, 근거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라는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55쪽입니다.

디지털크리에이터미디어서비스제공사업자가 준수해야 될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준수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사실상 의무규정인데 적정한 수익 배분, 다만 ‘노력할 것’ 형태로 자율규정이요 재량규정이기 때문에 ‘준수하여야 한다’라는 의무규정하고 자율규정이 적절하게 안배가 되면 저는 조문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57쪽입니다.

지원센터와 전담기관에 대해서 보고·자료제출 의무와 정부의 검사권한 명시하는데 통상적인 정부의 규제권 또 진흥권을 가지고 있는 정부 당국에 근거 규정을 만든 것으로 보여집니다.

58쪽입니다.

이 법에 따른 방미통위의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거나 업무를 기관에 위탁, 위임·위탁 근거를 만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지방자치법이 최근에 개정돼 가지고 통합특별시장 형태로 일부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59쪽입니다.

위탁받은 업무에 대해서 수뢰죄 등에 있어서 공무원 의제, 통상의 예입니다.

부칙 조항 6개월로 할지 3개월로 할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만약에 법이 제정되면 방미통위의 의견을 들어서 6개월로 할지 등을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 보고드립니다.

○소위원장 김현 정부 측 의견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상임위원 고민수 말씀해 주신 안대로 수용하고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현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이해민 위원 지금 보니까 법안들이 발의될 때는 방미통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과기정통부장관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제는 대부분 방미통위로 옮기는 자구 수정들이 있었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그런데 몇 가지는 정부 측으로 바꾸셨는데 예를 들면 24페이지에, 몇 군데를 했는데 이것은 다 예산 관련된 부분일까요?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예. 예산, 인력개발, 교육훈련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범부처 차원에서 대통령령을 만들 때 적어도 법제처의 심사를 거치는 과정에 다른 부처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민 위원 그러면 33페이지는 정부, 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 세 가지 안이 있는데 이것을 방미통위로 하는 부분은 방미통위 쪽으로 좀 더 좁혀서 하는 게 구체성에서 더 있어서 그럴까요?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지원센터니까요.

○이해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이것 말고는 수정의견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현 또 의견 있으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이정현 위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보면 그 목적에 방송미디어·통신의 융합 환경에 대한 능동적 대응 이 부분이 기재가 되어 있잖아요. 맞지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상임위원 고민수 예, 그렇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리고 직제상으로도 디지털방송미디어, 1인 미디어 정책을 명시하고 있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상임위원 고민수 예.

○이정현 위원 그런 차원에서 유튜브 등 신미디어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미통위

가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미디어 산업 전반을 다루고 생태계를 보다 경쟁력 있게 만들기 위해서 방미통위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디지털크리에이티브도 그 일환으로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심사검토 자료대로 동의하고요.

방미통위가 좀 더 적극적으로 문체부와 협의에 나서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현 혹시 방미통위 위원장하고 문체부장관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까?

하도록 하십시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진흥국장 강도성 예,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았는데요.

○소위원장 김현 고민수 상임위원님, 위원장하고 장관하고 협의하도록 주선하시고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상임위원 고민수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현 그리고 상임위원께서는 차관하고도 협의하십시오, 실무 단위에만 맡기지 마시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상임위원 고민수 예.

○소위원장 김현 그러면 여기까지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공청회 개최 여부를 한번 말씀하시고……

○소위원장 김현 공청회 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현 다음 주에 2소위 공개 공청회로, 저희는 비공개가 아니라.

그렇게 공개로 하는 게 낫겠지요?

○이정현 위원 문체부 쪽에서 참여하도록……

○소위원장 김현 차관 한 명 오라고 하십시오. 고민수 상임위원께서 그쪽 담당 차관 오도록 하고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상임위원 고민수 예.

○소위원장 김현 논의를 같이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실은 문체부 쪽하고 논의해서 일정 잡고.

그다음에 어떤 분이 좋을지에 대한 의견도 위원님들한테 물어보고 위원님들의 의견 받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항부터 3항까지는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당 위원님들도 최형두 간사님이 이 법안을 발의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협조 좀 해 주십시오.

정동영 의원실 없지요?

정동영 의원실에 전해 주십시오, 문체부장관하고 협의하도록. 장관끼리 얘기를 좀 해야지요, 법을 발의한 장관과 문체부장관하고.

그러니까 저희는 두 분이 계신 거예요. 정동영 장관 그다음에 방미통위 위원장하고, 박홍근 장관도 예산 관련해서 하시는 거니까 거기도 얘기를 해서, 저희도 얘기할 테니까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시급성을 요하는 법안이라서 그렇습니다.

4항부터 9항까지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법안 소위자료 4항~9항 스포츠 경기행사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을 다룬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각 의원님들의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약간씩 다릅니다.

먼저 김현 의원안은 월드컵·올림픽 등 보편적 시청권 보장이 특히 필요한 행사에 대해서 95%의 가시청 가구 비율 확보 그리고 KBS와 MBC를 통한 실시간 중계 포함을 의무화하고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해서 금지행위 그다음에 이에 대한 시정조치 규정을 명시하고 그다음에 중계방송권 계약 관련 자료제출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그 자료제출 된 것에 대해서 목적 외 사용 금지나 영업비밀 비공개원칙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한민수 의원은 국민관심행사 등의 종류와 등급을 분류해서 차등적으로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는데 방미통위가 방송사업자나 중계방송권자 등이 참여하는 사업자 자율협의체를 구성·운영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한정에 의원은 동·하계올림픽, 월드컵 등의 행사에 일반 국민이 유료방송 이용 없이 시청할 수 있도록 중계방송권자 등이 지상파방송사업자 등 다른 사업자가 중계방송권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접근 방식은 다르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에 보편적 시청권 관련해서 분쟁이 있으면 조정 권한을 부여하는 그런 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다음 신성범 의원안은 중계방송권자가 방송사업자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사업자에게도 중계방송권을 제공하도록 하고, 금지행위와 시정명령을 상세히 신설하고 그다음에 공동협상단은 지상파방송사업자로 구성하도록 하고, 중계방송권 공동구매 관련 일들을 진행하도록 근거 규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훈기 의원안은 국민관심행사 등의 범위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하고, 중계권 취득한 사업자가 일반 국민이 추가 비용 없이 시청할 수 있도록 다른 방송사업자에게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중계권을 제공하도록 실질적으로 보장하는데, 특정 플랫폼에 제공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방미통위가 중계권 제공 등에 관해서 조치 명령권의 근거를, 접근 방식은 다르게 의무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그다음에 국민관심행사 등의 중계권 확보 과정에서 과도한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서 방송사업자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제공자까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공동계약을 권고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최민희 의원안은 과급력이 큰 행사를 중대한 국민관심행사로 별도로 구분해서 관리하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하는데 중계권 확보 경쟁도 완화하기 위해서 지상파방송을 포함한 방송통신사업자까지 보편적 방송수단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방미통위가 사전 승인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만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각 개정안이 가장 쟁점이 되는 게 부칙인데요. 부칙에는 시행일과 적용례를 통상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만 김현 의원 등은 공포한 날 즉시, 한민수·한정에 의원안은 3개월 이렇게 시행 유예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데 적용례와 관련해서는 한민수 의원을 제외하고는 다섯 분의 의원 모두 개정안 시행 이후에 개최·방송되는 국민관심행사 등에 대한 중계방송권 계약에 대해서 다 계약 체결 시기와 상관없이 소급하도록 적용례를 두고 있는 게 그 차이가 있습니다.

4쪽 보시겠습니다.

개정안별 주요 내용을 보시면, 국민관심행사 종류는 표와 같습니다.

이거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법안을 심의하다가 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편적 방송수단의 정의도 비용 부담 없이 또는 방송통신사업자를 포함하느냐의 차이가 조금 존재합니다.

보편적 시청권 보장 방안은 김현 의원은 가시청 가구 비율을 95% 이상으로 하고 KBS·MBC를 당연히 의무적으로 포함시키고 그다음에 한정애 의원안은 비지상파방송사업자가 지상파방송사 등 타 사업자에게 중계방송권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서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는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고요. 신성범 의원은 다른 방송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할 의무까지 만드는 거고, 이훈기 의원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대신 특정 방송사한테만 송신하도록 할 경우에는 방미통위가 시정명령할 수 있도록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최민희 의원은 둘 이상의 전국 단위 지상파방송사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그 지상파가 실시간 중계를 협조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는 한정애 의원안에만 있고요 분쟁이 있을 때 조정하는 거고, 그다음에 금지행위를 조금 구체화하는 거고 그다음에 시정조치 근거 등을 두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것은 계약 관련 자료제출 의무, 그다음에 신성범 의원안은 공동협상단 이런 부분이 있고, 이훈기 의원안은 사실관계 조사라든가.

그다음에 공동협상단·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는데 한민수 의원안은 사업자 자율협의체를 구성합니다. 그다음에 신성범 의원안은 지상파가 참여해서 공동협상단을 구성하고 공동협상단이 구성이 안 되면, 여기도 승인이 있습니다, 방미통위가 승인을 하거나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고, 이훈기 의원안은 지상파 SO·PP에다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제공자까지 다 중계방송권 협의체에 공동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최민희 의원안은 공동협상단을 구성하는데 그 공동협상단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만 최민희 의원안은 중대한 국민관심행사 중계 시에 관련되는 계약 내용이라든가 이런 거를 또 협의체 구성 등에 관해서 방미통위에 사실상 사전승인권을 부여하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검토보고 요지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동·하계올림픽, 월드컵 이렇게 전 국민 누구나 무료로 중계방송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서 보편적 시청권을 넓게 보장하는 취지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만 김현 의원안 같은 경우는 KBS·MBC를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는데 그러면 SBS는 예전에 코리아풀에 참여했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OTT 사업자라든가 유료방송 사업자에 대해서 조금 진입 장벽이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되면 OTT 사업자가 혹시 중계방송권 확보해도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의무적으로 포함시켜야 되니까 조금 협상력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보편적 방송수단 정의에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라고 했는데 이게 조금 의미가 불명확한 게 아니냐라는 입장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공영방송의 수신료라든가 국가 예산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별도의 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법률

안의 포섭 범위가 달라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시청 가구 비율에 대해서 95%로 명확하게 하는 것은 충분히 수범자 입장에서 예측성을 높이는 효과는 있는데 현재는 가시청 가구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해서 다시 고시로 위임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는 9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법 규정이 다소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느냐는 측면도 있는 걸 감안해서 김현 의원께서 95%로 상향해서 명확하게 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런데 유료방송 시청률이 95%가 너무 높은 게 아니냐, 가입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어서 현재 한 96%까지 떨어졌는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실효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가시청 가구 비율 계산할 때 TV수상기 미보유 가구를 제외하는데 이게 적당한지, 그렇게 되면 수상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오히려 보편적 시청권을 제한받는 측면이 있고 또 TV수상기 없어도 중계방송할 수 있는 뉴미디어사업자 입장에서는 가시청 가구 비율을 계산할 때 조금 불리해지는 측면이 있지 않느냐, 이런 걸 감안해서 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국민관심행사 등 종류 규정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데요. 이게 개정안에 동·하계올림픽, FIFA 성인남자 국가대표로 되어 있는데 특히 필요한 행사로 하게 되면,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행 고시에 들어 있는 각종 주요행사 등의 범위가 법률로서 특정하기 어려워 너무 범위가 넓어지는 측면도 있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여성 월드컵 대표를 달리 취급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방미통위 의견을 이따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KBS는 아무래도 실시간 중계방송이 공영 재정 부담도 있고, 수신료로 받은 것을 방송권 재판매 수익 보장에 오히려 활용되게 되는 그런 불합리한 측면이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IOC나 FIFA에 대해서 국내 방송사업자가 협상력이 약화되는 측면이 있다. MBC는 중계방송권 구매 강요하는 상황은 사적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 또 MBC는 상법 적용받는 방송사인데 적자를 가져올 수 있는 걸 예정함에도 법률에 강제하게 되면 오히려 상법상 배임 문제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SBS는 손실이 엄청나게 큰 재정부담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쪽, 오히려 SBS는 방송사나 OTT·온라인사업자도 참여해서 코리아폴을 확대하는 방안이 적절하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JTBC는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서도 중계방송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중계환경 변화에 따라서 가시청 가구 비율을 95%로 상향하는 게 조금 부적절하다. 그리고 특정 사업자 중계권을 사실상 KBS·MBC로 보장해 주는 게 오히려 계약 자유를 침해하지 않느냐, 그리고 재판매 협상이 만약에 결렬이 되면 KBS·MBC하고 기존의 중계방송권자 간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또 JTBC는 나중에 손실보전을 통해서 정부 재정 지원 방안을 얘기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선방송은 지상파만 이용하는 가구가 3.5%에 불과한데 가시청 가구 비율 상향하는 건 실효성이 낮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매일방송은 시장 자율성 기능을 존중해 달라. 채널A는 방송편성권이라든가 중계권자 협상 범위, 방송사 간의 사적 계약 이런 걸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11쪽입니다.

관련 금지행위입니다.

금지행위는 중계조건 변경, 실시간 중계 이행이나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권한을 방미통위에 부여하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금지행위를 위반하면 이행강제 규제 수단을 방통위에 부여하는 건데 이게 방송편성의 자유 제한과 비례적으로 적절한 수단인지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청 명령을 안 따르면 나중에 매출 5%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여받기 때문에 방송사업자에 있어서는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방송편성의 자유 측면에서 잘 살펴보는 의견이 있습니다.

12쪽입니다.

방미통위의 의견은 이따가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13쪽입니다.

계약 관련 자료제출 의무입니다.

이거는 약탈적 가격 설정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방미통위가 이런 권한을 가지는 게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영업 자유나 계약 자유 침해 소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계약 내용을 전부 다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또 계약상 비밀유지원칙이 틀림없이 계약서상에 들어 있을 텐데, 더군다나 국제기구고 이런 부분이 통상 문제로 혹시 비화되지 않을지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14쪽입니다.

방미통위나 의견은 이따가 들으시면 되고요 이해관계자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JTBC는 자료제출을 받아도 방미통위가 과연 중계권 관련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겠는가 이런 의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선방송은 영업상 기밀에 관한 것을 제출하는 게 너무 과하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방송사업자 협상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저해가 되는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비밀유지 의무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1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통상적인 정부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면 시행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적용례를 보면 가시청 가구 비율을 상향하고, KBS·MBC 등에 실시간 중계 포함 의무를 부여하고 또 계약 관련 자료제출 의무 부여를 소급 적용하는 게 과연 적절한지…… 더군다나 법률 적용 대상이 이렇게 특정 개별 사건입니다, 이번에 월드컵을 앞두고 있는. 이렇게 소급 적용하는 게 평등원칙에 반하는 게 아닌가, 그다음에 이런 측면은 또 보편적 시청권 저해를 가지게 되는 공적 불평등 이것까지 감안해서 하여튼 정말 복잡한 함수인데요. 잘 풀어 보셔야, 비교형량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기본적으로 체결된 중계방송권자 입장에서 보면 재산권에 준하는 거기 때문에 신뢰 보호라든가 법적 안정성, 재산권 보호 측면의 헌법 원칙, 소급 금지 원칙 등을 감안해서 들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방미통위는 이게 부진정소급의 여지가 있다라는 입장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한번 들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KBS는 이에 대해서 예산, 사전 준비도 사실상 불가능하고

불리한 계약조건에 있어서 협상력이 저하되고 또 이미 뉴미디어 판매가 종료돼서 사실상 적자가 명백해진다면 이런 측면을 감안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MBC는 실질적인 소급 입법이라서 위헌 논란이 된다, JTBC조차도 소급 적용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18쪽, 국민관심행사 종류 및 보편적 방송수단 정의를 조문별로 말씀을 드리고 일정한 근거를 말씀드린 다음에 수정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안을 보시면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 행사 등이 방미통위 고시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김현 의원안은 고시에 있는 것 중에 하계올림픽, FIFA 월드컵 성인남자 등을 법률에 예시하고 나머지 돼 있는 부분을 95% 이상이 시청한다라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민수 의원은 별도로 구분하고 차등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것도 고시에 두도록 되어 있고요. 한정애 의원은 고시하는 행사 등에 대해서 지상파방송사 등을 달리 차별하지 말고 동등하게 조건을 제공하라는 취지고, 신성범 의원안도 고시를 통해서 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훈기 의원안은 특별한 행사, 일정한 행사, 호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되게 하되 고시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민희 의원안은 중대행사를 고시하는데 그중에서도 특별히 중대성이 인정되는 거는 따로 구분해서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쪽 보시면 신성범 의원안은 보편적 방송수단을 ‘국민관심행사 등을 추가적인 가입료 그 밖의 비용 부담 없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는 방송통신’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훈기 의원안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제공자라고 하는 전기통신사업법상의 근거 규정을 들면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제공자도 이 풀에 들어올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만들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76조 3항, 21쪽 기준으로 김현 의원안은 국민이 별도비용 부담 없이 실시간 시청할 수 있는 방송수단, 그다음에 한정애 의원안은 일반 국민의 추가적인 비용 부담 없이, 그다음에 신성범 의원안은 방송통신사업자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별 없이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 그다음에 이훈기 의원안은 일반 국민이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최민희 의원안은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도록 대리인이 방송사업자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별 없이 제공하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4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국민관심행사 종류가 각 개정안이 다른데요, 이걸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그다음에 보편적 방송수단 정의도 종전의 보편적 방송수단은 국민이 별도의 비용, 추가 비용 없이 시청할 수 있는 수단인데 이것을 좀 강화된 조건으로 재정의합니다. 신성범·이훈기·최민희 의원안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방송통신서비스도 보편적 방송수단에 포함시킨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게 행사 종류를 규정한 방식은 이후에 위원님들께서 재량적으로 결정하실 영역인데요. 김현 의원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하계올림픽하고 FIFA 성인남자로 했는데 ‘등’을 하게 되면 어차피 고시에 들어 있는 내용들의 범위가 넓어지는 측면이 있고, 다음에 한민수·한정애 의원 등은 방미통위 고시로

위임하고 있고, 이훈기 의원안은 법률에서 일부 제시하고 고시로 위임하고 있고, 그래서 25쪽을 보시면 현행보다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데 중대한 국민관심행사를 별도로 구분하고—이것은 한민수 의원안의 취지 등을 감안하는 방식입니다—그다음에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느 정도 올림픽이나 월드컵 경기 등을 일정하게 예시하고 그 밖의 행사는 고시로 하는데 고시로 바로 넘어가면 뭐하니까 적어도 대통령령을 거치도록 하는 방식을 수정의견으로 제시합니다.

그다음에 보편적 방송수단 정의 관련해서도 추가적인 비용에 관해서 조금 오해의 소지, 개별 수신료 부담 등이 있으니까 EU 사례 등을 감안해서 정의에 포함되는 주요 행사를 위해서 추가적인 비용 부담 없이, 신성범 의원안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반영하는 안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다음에 최근에 방송매체 이용 행태와 관련해서 이게 지상파만으로 커버가 안 되니까 보편적 시청권의 커버리지를 넓힌다는 차원에서 이것은 이훈기·신성범 의원 등이 제시한 안입니다—방송통신사업자도 중계방송권자가 될 수 있도록 범위를 조금 확대하는 수정안을, 23쪽을 보시겠습니다. 현행은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방미통위의 고시로 돼 있는데 수정안을 보시면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 행사를 고시해야 되는데 동·하계올림픽과 FIFA 성인남자 등 중대성이 인정되어서 보편적 시청권 보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이 부분은 최민희 의원안에 특별히 있는 내용들을 다 포함시킨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한번 거쳤다가 그다음에 고시에 하는 방식으로……

다음, 3항을 보시면 이훈기 의원 등의 안을 받아서 중계방송권자 또는 방송통신사업자 및 그 대리인, 방송통신사업자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24쪽 보시면 방송통신사업자도 필요한 범위 내에 제공할 수 있도록 포함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4항은 29쪽 보장 방안에서 별도로 설명하겠습니다만 관련되는 거니까, 국민 전체 가구 중에서 텔레비전 수상기는 김현 의원안 취지 등을 감안해서…… 왜냐하면 방송통신사업자가 들어오게 되면 이것 반영을 해도 커버리지가 넓어지는 효과는 그대로 상쇄가 되니까 넣어 뒀도 될 것 같습니다. 수상기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가구도 포함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행사를 위해서 추가적인 비용 없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는 방송수단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현 정부 측 의견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상임위원 고민수 저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는 국민관심행사에 대해서 국민들 누구나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해 주신 의원님들 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 구체적으로는 지상파 중계 의무와 온라인 중계 확보 방안 마련, 공동협상단 구성·운영, 자료제출 등에 구체적인 수단을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공감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조문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현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행정실의 의견을 봤고 방미통위의 검토의견을 봤는데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저희가 방

송 3법 개정안, 방미통위 설치법을 왜 제정했는지에 대해서 잘 유념하셔야 돼요. 윤석열 정부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방송 탄압을 했고 방송을 장악해서 공영방송을 망가뜨리려고 했던 것 그다음에 계엄을 통해서 영구집권 음모를 하려고 했던 점이 있어서 저희가 방송 3법 개정을 했던 거고 그다음에 방미통위 설치법을 제정한 겁니다.

이 보편적 시청권에 대해서 왜 개정안을 냈느냐 하면 윤석열 정권에서 공영방송을 해체시키고 공영방송을 소위 말하는 종편보다 못한 방송사로 만들려고 했던, 2008년도 방통위를 만들고 종편을 과다 승인했던 그 못된 행위들에 대해서 준엄하게 심판하고…… 보편적 시청권을 과도하게 규정하게 된 배경이 거기에서 비롯된 겁니다.

행정실에서 검토할 때 이것이 이재명 정부이기 때문에 이렇게 헌법을 얘기하고 방송사들의 이해를 반영해서 적시를 하셨는데 그런 마음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지만 현재 상황, 여전히 KBS는 파우치 박이라는 사장이 방송사에 공영방송의 제 역할을 못 하도록 방해하고 있고 거기에 덧붙여서 MBC는 눈치 보고 있고 SBS는 민영방송사로서 제 역할을 못 하고 있고 그알 같은 무도한 방송을 해 놓고도 제대로 이 부분을 살펴볼 생각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상파 방송 3사가.

그리고 비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도 있는데 보편적 시청권이 왜 도입됐고 그것을 이재명 정부에서 기어이, 여하히 그 정신을 이어가는 배경을 잘 유념해 주셔서 이 문제에 접근해야 된다는 점을 정부와 국회사무처 행정실에도 요청드리는 바이고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수 위원** 한민수입니다.

대통령도 말씀하셨지만 국민들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한 권리 방안 강화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요.

여기 궁금한 것 여쭙보려고 하는데요. 7페이지, 이 조사에 따르면 25년 기준으로 96.3% 이게 유료방송 가입률을 얘기하는 겁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기반국장전담직무대리 박진희** TV 미보유 가구를 뺀 경우에 유료방송 가입률이 96.3% 정도 됩니다.

○**한민수 위원** 지금 발의된 법안 중에 보면 가시청 비율을 95%로 상향할 경우에는 지나치게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얘기는 또 무슨 얘기지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기반국장전담직무대리 박진희** 검토보고서에 있는 내용인데요. 실질적으로 유료방송 가입률이 96.3%이고 김현 의원님이 발의하신 법안은 법에서 95% 이상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유료방송은 종편이 댔든 모든 PP 채널의 유료방송 가입률이 거의 96.3%이기 때문에 유료방송은 95% 이상으로 다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민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지속적으로 감소가 되기 때문에 상향할 경우에 부담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기반국장전담직무대리 박진희**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민수 위원** 그래요.

지금 이게 구분이 좀 됩니까? 이 96.3%에 제외된 부분들, 빠진 수치는 수상기가 없는

분들이에요? 아니면 지방 가면 유료 가입 안 하고 그냥 공중파로만 보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수치가 구분이 돼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기반국장전담직무대리 박진희** 지금 저희가 미디어매체이용 행태조사에서 확인한 바로는 유료방송 가입률 96.3% 외에는 지상파로 직접 수신하는 가구가 한 3.7% 되는 걸로 보고 있고요.

○**한민수 위원** 그러니까 다네, 100이네. 그렇지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기반국장전담직무대리 박진희** 예, 미보유 가구를 빼면……

○**한민수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수상기가 없고 그런 건 없는 거잖아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기반국장전담직무대리 박진희** 미보유 가구를 포함하면, 미보유 가구율이 지금 한 5.1% 정도 있습니다. 가시청 가구는 미보유 가구를 빼고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유료방송 가입률과 지상파 직접수신 가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노종면 위원** 아, 미보유가 빠져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기반국장전담직무대리 박진희** 예.

○**한민수 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기반국장전담직무대리 박진희** 그런데 미보유 가구를 빼는 게 맞는지 포함시키는 게 맞는지 이것은 정책적으로 판단이 필요한데 영국 같은 경우는 도달률로 다 포함하는 형태로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민수 위원** 그러니까요, 미보유 가구 비율이 조금 전에 몇 %라고 하셨지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기반국장전담직무대리 박진희** 5.1%.

○**한민수 위원** 꽤 되네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기반국장전담직무대리 박진희** 미보유 가구가 한 114만 정도 됩니다.

○**한민수 위원** 보니까 꽤 돼요. 그러면 이분들은 유료방송도 안 되고 아예 시청을 안 하는 가구들인 거지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기반국장전담직무대리 박진희** 예, 시청을 안 하는 가구지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TV는 없지만 폰으로도 시청할 수 있기 때문에……

○**한민수 위원** 그래서 OTT 얘기가 나온 거지요?

○**소위원장 김현** 인터넷 TV로 시청하는 걸 의미하는 거지요? 수상기를 보유하지 않은 가구가 5.1%인데 그렇다고 그 5.1%가 텔레비전을 보지 않는다고 연결 짓는 건 아니잖아요.

○**노종면 위원** 그런데 그 안에는 오지에 계셔서……

○**소위원장 김현** 아니야,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노종면 위원** 그런 분들도 있어요. 자연인들도 있어요.

저는 이 기준 상향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근본적인 시각 차이가 있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유료방송 가입률이 떨어지고 TV 수상기로부터 떨어지는 비율이 늘어나기 때문에 일정한 수준 이상의 의무시청 가능 비율을 제시해서 그걸 견인하는 건데 이게 떨어지고 있으니 기준이 높으면 우려되는 바가 있다. 법의 취지가, 이런 기준을 잡는 취지가 그렇게 떨어질 테니까 못 볼 사람들이 있으니까 볼 수 있게 만드는 수단을 확보하라, 이런 취지로 지금 법을 개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떨어지고 있기 때문

에 그 떨어지는 것 이상으로 기준을 제시하는 게 맞지요. 제가 뭘 좀 오해했나요? 하엿든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호주의 가시청 가구 비율 기준을 50%로 제시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보다는 훨씬 낮은 것처럼 하지만 호주는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광케이블 보급률, IPTV 시청 가구수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호주는 호주 실태에 맞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보게 의무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준을 한 50%로 제시하는 거예요.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호주의 광케이블 보급률이 한 30%대인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우리는 거의 100%에 육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실태에 맞는 보편적 시청권 확보를 위한 기준은 당연히 호주나 다른 독일이나 이런 데보다 훨씬 높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소위원장 김현 말씀하세요.

○이훈기 위원 제 입장 얘기하기 전에 몇 개 물어볼게요.

지금 JTBC가 중계권을 몇 년까지 가지고 있지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기반국장전담직무대리 박진희 2032년까지 올림픽·월드컵 경기에 대한 중계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훈기 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해서 한 7년 가지고 있는 거지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기반국장전담직무대리 박진희 예.

○이훈기 위원 과거에 코리아폴 같은 데서 공동 협상을 해서 공동 중계한 적이 있잖아요. 과거에 계속 그렇게 했나요, 이렇게 단독이 처음인가요? 어떻게 되지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기반국장전담직무대리 박진희 단독은 처음입니다.

○이훈기 위원 단독은 처음인가요?

그래서 저는 일단 JTBC가 중계권을 뺏기 때문에 7년 동안은 이런 논란이 계속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지상파방송, 공영방송은 공적 영역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지난해에도 KBS 1000억인가 적자 나고 MBC도 그렇고, SBS는 흑자 났지만 제가 알기로는 외국에서 수입을 크게 올려 가지고 한 1000억인가 흑자 났다고 그래요. 그러면 지상파에 강제하기도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까 얘기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라든가 PP 다 들어와서 비용을 나눠야 된다, 부담이 너무 크니까 나눠야 된다 이게 제 입장이거든요, 현실적으로. 지금 7년 동안 지상파만 감당하라 그러면 지상파에 국가에서 재원을 보전해 주지 않는 한 쉽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강제성을 뒀도. 그래서 온라인동영상서비스나 여러 가지가 같이 들어와서 이 비용을 좀 분담해서 다양하게 국민들한테 제공해야 되지 않나 이게 제 입장이거든요. 방통위 입장은 좀 어떠세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기반국장전담직무대리 박진희 여러 위원님들이 중계방송협의체를 구성하게 하고 관련된 규정들을 입법 발의해 주셔서 공동협상단이나 중계방송협의체가 구성이 된다면 그런 부분들을 좀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훈기 위원 아니, 공동협상단 구성을 이미 7년 동안은 못 하잖아요, 중계권을 따 왔으니까. 지금 당장 7년 동안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잖아요. 공동협상은 7년 후에나 가능한 것 아니에요, 일단은 중계권을 JTBC가 뺏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기반국장전담직무대리 박진희 예,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훈기 위원 그렇게 지금 현실적인 얘기를 하셔야지.

○이정현 위원 지난 동계올림픽 중계를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폭발하는 계기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방미통위에서 분석을 좀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JTBC하고 네이버가 중계를 했나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기반국장전담직무대리 박진희 예.

○이정현 위원 JTBC와 네이버를 통해서 중계를 했을 때 철저하게 시청하지 못했던, 사각지대에 놓였던 인구의 비율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기반국장전담직무대리 박진희 일단 직접 수신 가구에 해당되는 5.1%……

○소위원장 김현 3.7%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기반국장전담직무대리 박진희 죄송합니다.

3.5%에 해당되는 한 78만 정도는 TV로 시청을 못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니까 JTBC 유료방송 계약을 하지 못한 분들이 3.5% 정도가 된다? 78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기반국장전담직무대리 박진희 TV 미보유 가구를 제외했을 때는 3.5%고요 포함하면 한 3.7% 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3.5~3.7%가 되고요.

그다음에 네이버를 통해서 보신 분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기반국장전담직무대리 박진희 예, 네이버로는 온라인으로……

○이정현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완벽하게 사각지대에 놓인 비율을 정확하게 추산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네이버로 안 봤다고 하더라도 3.5~3.7%는 사각지대에 놓여서 보고 싶어도 못 본 분들이네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기반국장전담직무대리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런데 이 법에 따르면 보편적 시청권을 전 국민 95% 이상이라고 한다면 지금 3.7%라고 하더라도 한 96%는 봤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보려고 했으면 충분히 볼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96%. 그렇지요?

지금 이 법은 우리가 보편적 시청권을 위해서 국민의 95% 이상이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게 여러 가지 전제 자체가 조금 흔들리는 것 아닙니까? 보편적 시청권과 관련된 이 법이 없어도, JTBC가 단독 중계를 했어도 96% 정도는 볼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기반국장전담직무대리 박진희 지금 TV 미보유 가구로……

○이정현 위원 아니, 이게 JTBC가 아니고 TV조선이나 채널A라고 하더라도 똑같은 결과잖아요, 유료방송 하는 사람들이 JTBC만 신청해서 보는 게 아니니까. 중편이 나오면 최소 JTBC 나올 때 TV조선도 나오고 채널A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SBS, KBS, MBC, JTBC, TV조선, 채널A 이런 중편을 포함한 지상파들 한 군데만 해도 95% 이상이 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기반국장전담직무대리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면 지금 보편적 시청권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막 열을 올리면서 토론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기반국장전담직무대리 박진희** 그런데 김현 의원 발의 법안에는 가시청 가구 95% 이상이라는 조건과 그 뒤의 단서로 KBS와 MBC의 실시간 중계를 의무적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반드시 2개 채널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KBS, MBC 그리고 SBS 등 지상파가 아니면 중요한 스포츠 행사나 문화 행사를 볼 수 없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사각지대가 한 30% 된다 그러면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95% 이상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보편적 시청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 JTBC가 단독으로 중계해도 96%가 볼 수 있는 환경인데 왜 우리가 보편적 시청권을 위해서 이 논의를 해야 되느냐는 말이지요.

○**소위원장 김현** 보편적 시청권이라는 것은 100%지요, 100%.

○**이정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는 보편적 시청권으로 해서 95%로 하는 게 맞느냐는 말씀입니다. 근본적인 의문을 제가 던지는 거예요.

○**노종면 위원** 저도 좀 보태서 정리를 해 보면 이 논의가 여러 가지 논점들이 막 얹혀가지고 어떤 사람은 퍼센티지로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플랫폼이 지상파냐 또는 무료냐 이렇게 접근하는데 이게 다 섞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편적 시청권의 또 다른 표현은 플랫폼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 보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의 본질에 더 가까운 표현은 저는 선택권 보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IPTV에 가입해 있지 않아, 그런데 95%에는 들어가. 왜냐하면 온라인도 볼 수 있고 OTT도 볼 수 있고 지상파도 있어요. 나는 유료는 아니야, 그런데 95% 안에는 들어가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수치로만 얘기하면 여기 논의를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 중요한 것은 ‘내가 이것을 보기 위해서 꼭 종편 또는 IPTV 돈 내고 봐야 돼?’ 이 문제를 해소하자고 시작된 논의인 거라는 것을 우리 내부적으로는 아주 명확히 이해하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현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점을 연결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저는 보편적 시청권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상파나 종편이 단독 중계를 했기 때문에 보편적 시청권이 훼손됐다고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잘못될 수도 있다.

보편적 시청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국정감사 등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만 티빙을 비롯해서 특정 OTT가 독점 중계를 할 때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티빙이라든지 넷플릭스 같은 데서 중계를 하게 되면 티빙이나 넷플릭스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예 못 보는 것이기 때문에 OTT가 독점 중계할 경우에 보편적 시청권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KBS, MBC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KBS, MBC, SBS, 종편 중의 하나는 최소한 OTT와 같이 할 수 있도록 방미통위에서 보편적 시청권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것은 맞는데 OTT는 맞지만 이제 지상파와 종편의 차이는 크지 않은 상황에서 우

리가 KBS, MBC, SBS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것은 95% 이상의 목표를 설정한 상황에서는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소위원장 김현 아니지요. 지금 잠깐만, 제가 이 법을 발의했던 배경에는……

중편하고 지상파하고 같으면 왜 그러면 특별부담금 형태의 수신료를 냅니까, 가구당? 왜 특별부담금을 의무화시켰습니까? 이것 안 내면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물론 중편으로도 보지만 중편으로만 봤을 때의 스포츠 경기, 소위 보편적 시청권이라는 대의가 충분히 실현이 안 되고 두 번째로는 JTBC가 이번에 예를 들어 동계올림픽을, 패럴림픽을 보도를 안 했어요. 방송을 안 했어요. 보편적 시청권을……

○이정현 위원 KBS가 했어요.

○소위원장 김현 아니, 패럴림픽 아예 안 했어요, 보도를.

○이정현 위원 중계.

○소위원장 김현 중계를요.

○이정현 위원 중계를 KBS가 하지 않았나요?

○소위원장 김현 아니요, 그게 아니고. 어쨌든……

○이정현 위원 KBS가 했어요, 패럴림픽 중계.

○소위원장 김현 아니, 그러니까 JTBC가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편적 시청권이 보장이 됐느냐? 아닙니다.

그리고 중편하고 지상파방송은…… 지상파방송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국민에 대한 의무가 있어요. 그러면 세금으로 걸어야지요, 더 강하게. 그리고 공영방송, 소위 말하는 전기를 켜서 보는데 결정적으로 지금 여기 사각지대가, 제가 하나 예를 들면 교도소·구치소에 있는 사람이 6만 7000명이에요. 이 사람들은 선택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95%로 상한선을 올리는 이유는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그게 인터넷TV로 보기 때문에 공영방송과 지상파가 동일하다 그렇게 보면 그것은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염두에 두고 공영방송의 역할을 강조하는 거지…… 일반적으로 인터넷 방송으로 1만 얼마 더 내고, 2500원으로 볼 수 있는 사람, ‘나 텔레비전 없으니까 수신료 안 낼게’라고 하는,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미보유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보편적 시청권을 왜 강조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이 사회 전반의 산업하고도 연결되는 문제잖아요. 예를 들어서 동계올림픽을 이번에 지상파방송에서 방송했을 경우 그 피땀 어린 스포츠인들이 갖고 있는, 과학적인 문제나 아니면 기술적인 문제나 그다음에 상업적인 문제까지 다 상승되는 건데 JTBC만 보도했기 때문에 나머지 산업의 부흥을 일으키지 못했던 점까지 종합적으로 저희가 봐야지 단순히 텔레비전을 다 볼 수 있는데 몇 퍼센트를 위해서 하는 것은 또 역차별 아니냐라는 논리인 것 같습니다. 중편에 대한 역차별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보는 시점은, 시각은 우리가 좀 더 면밀히……

왜 우리가 공영방송을 발전시키냐 이것은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예를 들었는데 이런 것 정부에서 할 때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이 가장 위대하다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민주주의의 촛불 혁명으로 만든, 빛의 혁명으로 만든 이 대한민국의 민

주성과 우수성은 선진국 그 어디보다도 더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예, 영국의 예를 드는 것, 선진국은 이것 하는데 안 하는데, 물론 참고는 될 수 있는데 그것이 기준이 될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훈기 위원** 저는 누구나 볼 수 있는 보편적 시청권, 아까 김현 위원장님께서 교도소 얘기했는데 누구나 볼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동의하고.

그런데 저는 어떤 시청 패턴을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JTBC가 이번에 평균 시청률이 얼마 나왔어요, 동계올림픽? 그 자료가 없나요?

○**소위원장 김현** 잠깐만요. 이훈기 위원님, 그것은 낮밤이 바뀌어서 그냥 평균 시청률로만 볼 수 없는데 되게 낮았던 것은 맞습니다.

○**이훈기 위원** 그래 갖고 저는 JTBC 평균 시청률하고 과거에 지상파들이 중계했을 때 평균 시청률하고 비교해 봤으면 좋겠고, 그런데 달라지기는 했을 거예요. 뭐냐 하면 국민들이 올림픽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 낮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옛날에는 정말 밤새워서 보고 그랬지만 요즘은 그런 세상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는 JTBC하고 또 네이버가 중계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네이버의 시청 비중은 어느 정도인지 이런 패턴을 일단 분석할 필요도 있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자료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방미통위에서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기반국장전담직무대리 박진희** 예, 알겠습니다.

○**노종면 위원** 갈래를 타면 사실 논점이 금방 저는 잡힐 것 같은데, 사실 존경하는 이정현 위원님 의견에 다 동의하지만 어떤 설정상 이해 안 되는 부분은 OTT랑 종편은 플랫폼의 성격을 나눌 때는 저는 동일하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료이기 때문에. 그리고 KBS도 물론 수신료를 내는 입장에서 보면 유료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것은 준조세의 형태로 하는 거니까 이것은 금액상 무료로 가깝기도 하고 그리고 범용성이 있는 거지요, 누구나 다. 그런데 IPTV는 우리나라가 특수한 환경이어서 보급이 많이 됐다 뿐이지 핵심은 유료다.

그러니까 국민께 보편적 시청권을 돌려 드려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유료가 아니어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딱 이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선택권 보장으로 이해하면 조금 더 쉽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정현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3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보편적 시청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김현 위원님과 노종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95%의 목표 설정과 현실에 약간의 괴리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이 법을 심사할 필요가 있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96% 이상의 유료방송의 비율이 있지만 이것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요.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이 다 빠져나갈 수 있고 유료방송의 시청률이나 가입률이 낮아짐에도 불구하고 무료로 볼 수 있는 그런 보편적 시청권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또 하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건 지상파나 종편뿐만 아니라 OTT 독점 중계로 인해서 발생하는 보편적 시청권의 필요성 이 부분도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챙겨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한민수 위원** 위원장님, 한말씀……

○소위원장 김현 예.

○한민수 위원 이정현 위원님 지적이 일면 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우리가 왜…… 보편적 시청권을 대통령님도 말씀하시고 많은 의원들이 법안을 내고 한 것은 아까 유료방송 시청률, 가입률 이게 96%라고 하더라도 이번에 한 종편이 대단히 중요한 동계올림픽 중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많은 국민들이 보지 못한 건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도 있겠다.

그리고 아까 유료와 무료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말 그대로 보편적 시청권으로 접근을 할 때 지금 잘 안 되는 부분들을 우리 익히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 종편이 32년까지 중계권을 모두 독점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과 또 재판매에 있어서 지금 상당히 난항이 거듭되고 있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많은 국민들이 이것을 제대로 시청하지 못하는 불편함은 있는 게 사실이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법도 발의 했고 논의되고 있다, 여기에 중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종면 위원 방미통위의……

말씀 먼저 하세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상임위원 고민수 한말씀만 드리면 김현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누구나 무료로 중계 방송에 접근해야 된다고 하는 그 취지를 살리고 이정현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조화를 시키면 직접 수신료를 포함한 전 국민 95% 이상이라고 하면 그 두 가지를 조화를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노종면 위원 저는 지금 하고 있는 논의는 사실 결국은 다 정리될 거라고 봐요. 그런데 핵심은 지금 향후 7년 치의 중요한 스포츠 중계권을 한 회사가 갖고 있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법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그것과 별개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비하는 법을 만들 것인가, 이 입법의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방미통위에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내부적으로는 그게 조율이 돼 있는지 모호합니다, 솔직히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만약에 정책 목표, 이 입법의 목표를……

지금 당장 여름부터 월드컵 중계가 있을 거고 또 동계올림픽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면 국회는 뭐 했냐, 방미통위는 뭐 하냐 이런 얘기들이 있을 겁니다, 방송사에 대한 비판과 무관하게. 그러니까 이것을 해결할 그런 입법 수단이 있다고 보고 지금 우리가 접근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거기에 대한 갈래가 안 타졌어요.

아까 검토보고 한 내용을 보면 김현 위원장님이 발의한 법안 등에만 부칙을 통해서 앞으로 다가올 그런 스포츠 이벤트에 관한 것도, 그 이벤트는 아직 시작이 안 됐으니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자라는 그런 걸 제안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이른바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해당될 수 있어서 현실성이 있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한 갈래 정리가 선행돼야 된다.

그런데 만약에 이걸 소급이 된다 그러면 이 수단은 못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쓰지 않고 당면한 향후 몇 년 치의 스포츠 이벤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입법 수단이 있는가인 거지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답이 없습니다, 솔직히. 그것 먼저 갈래를 타야 이 논의가 의미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정말 소급입법금지에 해당돼요, 이것? 소급에 해당돼요?

○소위원장 김현 아니, 그거 헌법재판소에서 하면 몇십 년도 걸려요. 그거 헌법재판소

걱정해 가지고 법을 못 만든다 그러는 건 저는 좀 안 맞다고 보고, 이것부터 먼저 할 리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노종면 위원** 아니, 우리 내부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있으면 힘들기는 하지요.

○**소위원장 김현** 아니지요. 헌법재판소에 갔을 때의 얘기지 않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아니, 그래도 우리 국회에서 입법을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입법의 원칙인 법률 불소급의 원칙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은 가장 엄중하게 판단해 주시는 게 사실 입법 정신인데……

○**소위원장 김현** 그러니까 엄중하게 판단할 테니까 행정실에서 너무 엄중 안 해도 됩니다. 판단할 건데, 지금 얘기하는 그 가르마 타 달라는 것도 방미통위에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소급입법이라고 주장, 소급입법이라서 헌법을 훼손하는 거라고 하는 행정실의 입장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주십시오, 다음번 논의를 할 때.

미안하지만 이게 사실은 방미통위가 제 역할을 못 해서 생긴 문제가 가장 큰 거예요, 윤석열 정부의 방통위가.

그리고 방미통위가 정상화되고 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송사업자들과 논의를 해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줬으면 그건 또 효율적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요. 그러나 그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이 문제 때문에 규정을 강하게 만들자는 거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윤석열 정권에서 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의 한 파편이 떨어진 게 이 보편적 시청권이 훼손당한 거라고 저는 보고 그 방안을 찾아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논의조차 안 하면 손 놓고 있는 국회 아니겠습니까.

○**노종면 위원** 예, 해야지요.

더 하실 건가요?

○**소위원장 김현** 하나만, 한민수 의원 법안을 먼저 하겠습니다, 한민수 의원 법안.

12·13항 관련된 부처 들어오라고 하십시오.

일단 얘기 듣고 논의는 다음에 할 거예요. 한민수 의원 게 워낙 오래돼 가지고 일단은 12·13항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12항·13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민수 의원안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중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해당 정보에 단순 접근·열람하는 경우는 조치를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재강 의원안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유통해서는 안 되는 불법정보 중의 하

나인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중에서 북한 관련 정보를 제외하는 형식으로 북한 자료 접근의 근거를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한민수 의원안은 개정안에 따라서 관련 사이트나 게재 정보의 접근·열람이 허용되더라도 현재 여전히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1항제8호에 따라서 유통이 금지되고 있기 때문에 조문 간에 조금 상충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정보의 내용과 무관하게 정보 접근·열람, 이건 제공방식인데 이 방식에 따라서 규제에서 적용을 배제하는 방식이 적절한지 한번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재강 의원안은 제44조의7제1항제8호에서 북한 관련 정보를 불법정보의 범위에서 제외를 하는데 그런데 북한 관련 정보라고 그러면 개념과 범위가 추상적이고 모호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들을 제외해야 되는지 수범자는 조금 헷갈릴 염려가 있으니 구제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현행법 제44조의7제1항제9호에서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방조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재강 의원처럼 단서를 이렇게 두더라도 여전히 9호에 포섭될 수 있어서 법률 간의 일관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참고로 외통위에서 현재 상정돼서 계류 중인 북한자료의 관리·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북한자료의 수집·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의 형태로 일종의 제정법이 논의 중인데 그 안에서 보면 북한자료 중에서 대한민국의 존립·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게 명백한 정보를 특수자료로 구분하도록 그 안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외의 자료를 일반자료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것을 구분해 가지고 접근을 허용하도록 하는 걸 그쪽 법과의 체계의 일관성을 감안하면 그쪽 법의 심사 경과를 보면서 의논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3쪽 보시겠습니다.

북한 관련 사이트 접근·열람 허용, 방금 의견을 말씀드린 것처럼 한민수 의원안은 1항 8호의 정보에 관해서도 서비스 제공자,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단순 열람을 허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조치에서 제외합니다.

조치라는 게 그겁니다. 해당 정보 처리를 거부하거나 정지하거나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제외해 주는 겁니다, 방식은. 그래서 사실상 북한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조항인데 그렇게 되더라도 여전히 8호의 방법의 금지 정보 조항에 포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충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물론 이재강 의원안은 불법정보에서 아예 제외하는 방식이 오히려 입법체계적으로 적절한 게 아니냐 그런 식으로 방식을 취했는데, 다만 제외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통위에 계류돼 있는 법안과의 상충 문제도 고민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또 현재 접근·열람 이걸 유통하고 명백하게 구분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접근·열람 이걸 제공방식인데 방식을 가지고 방미통위가 제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게 과연 적절한지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 외에 방미통위 의견을 이따 들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통일부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공자,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접근·열람의

별도 조치를 하는데 이게 기술적 부담을 지게 되는 게 조금 부담스럽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국정원은 아까 말씀드린 외통위에 계류 중인 법률에 따라서 일반자료일 경우에는 허용하는 게 적절한 것 같고 그다음에 단순 접근·열람 조치 의미가 헛갈릴 수 있다는 측면이 있고요.

7쪽 보시면, 경찰청은 단순 접근·열람만 허용되도록 조치해서 일괄적으로 방미통위가 제한하는 것보다는 심의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서 심의 의결을 통해서 제한하고 접근을 허용하자는 취지입니다.

8쪽까지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정보 범위에서 북한 관련 정보를 제외하는데 이걸 법률 명확성 측면에서 북한 관련 정보가 조금 추상적이고 애매하니까 여러 가지 개정안 취지, 이재강 의원과 한민수 의원의 개정안 취지를 감안하면 이 중에서 북한이 직접 운영하는 사이트에 대해서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접근을 허용하되 북한 당국이 직접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상의 정보는 제외하도록 문구를 수정하고 다만 또 너무 허용을 많이 하면 그러니까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문구를 추가시켜서 이걸 국정원의 의견과 지금 외통위에 계류돼 있는 법안들의 취지를 감안해서 문구를 추가해서 아까 말한 중요정보에 해당될 수 있는 부분, 국가의 존립·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목적, 그런 정보 등은 그렇지 않도록 자구를 수정하게 되면 중요정보에 대해서 보호함과 동시에 북한 정보에 대한 접근권도 허용해 줄 수 있는 정도의 절충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현 정부 측 의견인데요.

잠깐만, 오늘 지금 배석해 있는 통일부……

○통일부사회문화협력국장 강연서 사회문화국장 강연서입니다.

○소위원장 김현 이쪽으로 앉으시고요, 통일부 앉으시고.

방미통위 의견 먼저 듣고 통일부 의견 듣겠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상임위원 고민수 북한 자료에 대한 접근권을 확대해서 북한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고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개방이 가능한 북한 자료의 허용 범위를 구체화한 수정의견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김현 통일부 의견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사회문화협력국장 강연서 통일부에서도 국민들의 인식이라든가 또는 북한에 대한 제대로 된 자료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고 알권리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관계 부처간 수정안에 대해서 입법을 해 주시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김현 한민수 위원님.

○한민수 위원 제가 발의한 사람으로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일전에 이런 반대 의견에 대해서 이걸 우리 국민을 주체적인 존재로 취급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전·선동에 넘어가는 객체로 보는, 저는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미 해외에서는 열람과 접근이 다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보고 우리 국

민들이 넘어갈 것이다 이런 식의, 오늘 국민의힘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안 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전 보수 정부에서도, 박근혜정부였습니까? 아니군요. 윤석열 정권 때문가요, 권영세 전 통일부장관도 찬성 입장을 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전에 수석전문위원 여러 가지 검토의견 중에 수용 가능한 부분들은 검토를 할 수 있겠습니까라는 전반적인, 지금 이 상황에서 왜 이런 법이 발의됐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그런 적합성이랄지 타당성은 충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현 특별히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은……

○노종면 위원 의결이 가능할 뻔했네.

○한민수 위원 아까 했으면 의결될 뻔했었어요. 의결하는 건데……

○소위원장 김현 의결이 안 되지요. 왜냐하면 야당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의결을 하면 필버가 돼요. 필버를 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웃음소리)

○한민수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현 12항과 13항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안건을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방미통위 상임위원을 비롯한 통일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과 보좌직원들,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과방위 직원, 의정기록과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석 위원(6인)

김 현 노종면 이정현 이훈기 이해민 한민수

○출장 위원(1인)

신성범

○청가 위원(2인)

김장겸 이상희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원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입법심의원 정민주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류제명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임정규

통신정책관직무대리 홍사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고민수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방송미디어진흥국장 강도성
방송기반국장전담직무대리 곽진희
시장조사심의관 신승한
통일부
사회문화협력국장 강연서